

	웰빙특성화 추진 규정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16. 9. 1.
		최종개정일자	
		담당부서	기획산학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(이하 “대학” 이라 한다)가 대학비전으로 설정한 웰빙특성화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정의) “웰빙”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나 질병이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①이 규정은 웰빙특성화추진위원회와 웰빙특성화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학과, 사업단 등의 기구에 적용 된다.

②웰빙특성화추진사업 추진 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간호학과
2. 물리치료과
3. 치위생과
4. 웰빙복지융합과
5. 운동건강과
6. 뷰티미용과
7. 실용음악과
8. 호텔조리영양과

③웰빙특성화사업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웰빙특성화 추진위원회
2. 웰빙헬스센터
3. 웰빙비즈니스센터
4. 웰빙홍보센터

제4조(정책수립) ①기획산학처는 웰빙특성화에 관한 대학의 종합 정책을 수립한 후 대학발전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성화위원회에 상정한다.

②사업단은 웰빙특성화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다.

③특성화 추진위원회는 특성화 사업비예산 등 세부추진계획을 심의한다.

제5조(웰빙특성화 추진위원회) ①웰빙특성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웰빙특성화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위원회는 교무위원, 관련 학과장, 그리고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
④위원장은 회의를 소집·주재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.

- ⑤ 기획산학처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.
-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1. 대학 웰빙특성화 계획의 종합 및 심의
 2. 특성화사업의 심의 및 사업성과 평가
 3. 웰빙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 4. 기타 웰빙특성화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

제6조(웰빙특성화 추진사업단) ① 웰빙특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성화추진사업단(이하 "사업단"이라 한다)을 둔다.

- ② 사업단은 웰빙헬스센터, 웰빙홍보센터, 웰빙비즈니스센터 등으로 구성된다.
- ③ 각 단위 사업단은 웰빙특성화 추진계획, 추진실적 등을 매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특성화 관련 학과의 역할) ① 특성화 관련 학과는 산업수요 맞춤형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특성화 관련 학과는 대학의 우수사례로 제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제8조(성과지표 관리) 특성화 관련 학과는 취업률, 신입생충원률, 재학생탈락률, 전임교원 확보율 등의 지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제시된 지표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성과평가 및 환류) ① 해당학과, 사업단, 부서는 특성화 계획을 실행한 후 그 실적을 익년도 2월말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② 위원회는 계획 추진실적을 분석하여 성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년도 계획에 환류하여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총장은 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